방송통신위원회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2010. 5. 7.(금)

보도자료

2010년 5월 7일(금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,나. 방송운영총괄과 김재영과장(2310) 다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과장(2530)
라.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과장(2470)
[보고안건]
가.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광수팀장(2190) 나.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(2410)
다. 뉴미디어정책과 조영훈과장(2450)

2010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**의결안건 4건**과 **보고안건 3건**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(첨부 참조)

o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의한 방송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(주)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10개 법인(13개 채널)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한 결과,

- 방송법 제108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사업자별로 500~3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

※ 8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2009. 10～11월 방송내용을 조사

나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및 서면의결에 관한 건

o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건과 향후 방송광고 법규위반에 대해서 서면의결하는 건을 심의한 결과,

- 법정 광고시간, 광고방법(횟수·건수 포함)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,

  ※ **광고시간은 위반 정도, 광고방법 · 건수 · 횟수는 위반 횟수**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1/2 범위 안에서 감경, 2배의 범위 안에서 가중

- 광고법규 준수 강화 및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초(1차) 위반행위에 대한 "행정지도"를 폐지하고,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

- 또한, 현행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간 위반에 대해서만 서면의결하고 있으나,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라 향후 방송광고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서면의결 하도록 의결함

〈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〉

최초 위반시	2차 위반시	3차 위반시	4차 위반시	5차 위반시	비고
행정지도	기준금액의 1/2 감경(500만원)	기준금액 (1,000만원)	기준금액의 2배 (2,000만원)	4차 부과금액의 1/2 가산(3,000만원)	방송법제108조제1항에 의거, 최대 3,000만원 초과 불가

〈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〉

① 방송법시행령 별표4 제10호 '가', '나(광고방법·건수·횟수)', '다' 목

위반횟수	1차 위반시	2차 위반시	3차 이상 위반시
과태료 부과액	기준금액의 50% 감경	기준금액	기준금액의 100% 가산

② 방송법시행령 별표4 제10호 '나(광고시간)', '라(광고편성비율)' 목

위 반 정 도	과태료 부과액
기준시간 또는 비율의 5% 이하	기준금액의 50% 감경
기준시간 또는 비율의 5% 초과~10% 이하	기준금액
기준시간 또는 비율의 10% 초과~20% 이하	기준금액의 25% 가산
기준시간 또는 비율의 20% 초과~30% 이하	기준금액의 50% 가산
기준시간 또는 비율의 30% 초과~40% 이하	기준금액의 75% 가산
기준시간 또는 비율의 40% 초과	기준금액의 100% 가산

※ 비고

- 위반횟수의 산정기준은 위반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함
- 위반행위에 따른 **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**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/2을 가산하여 부과
- "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" ①, ②항의 각 목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(단, '나'목의 광고방법·건수 · 횟수, 광고시간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이 높은 것을 적용)

다. 기간통신사업자 위성휴대통신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

o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(유)가 (주)LG텔레콤의 위성휴대통신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인가 신청('10. 1. 29)해 옴에 따라

-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(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)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, 해당 사업양수를 인가하기로 의결함

라.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(현대홈쇼핑 등 3개사)

o 방송법 제17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0년 5월27일 또는 6월3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,

- ㈜현대홈쇼핑, ㈜우리홈쇼핑, ㈜농수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되, ㈜우리홈쇼핑, ㈜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
< 재승인 조건 >

· ㈜우리홈쇼핑 재승인 조건 : ㈜우리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계획에 제시한 중소협력 업체 보호 및 상생방안, 고객 보호 방안, 방송의 공적 책임, 공익성 확보 방안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

· ㈜농수산홈쇼핑 재승인 조건 :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% 이상으로 유지할 것

[보고안건]

가. 융합과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(안)에 관한 사항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o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,

- '융합과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(안)'을 마련하여 보고함

나.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o 방송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'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'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※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(공정한 경쟁환경 조성)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o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방송플랫폼(가입자 확보)시장, 채널 거래시장, 방송광고시장,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장에 대해 실시될 예정임

- 특히,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지상파 역외 재송신 정책을 위한 시장상황평가와 연계되어 실시될 예정임

o 방통위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방송시장의 사전규제 도입 또는 규제완화 필요성과 사후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,

- 지상파 재송신 정책, 유료방송 수신료 배분정책, 신규 사업자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

다. 「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사항

o KBS 등 7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가 재허가 의결 시('09.11.26) 조건으로 부과된 '방송보조국 구축계획'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고함

< 재허가 조건('09.11월) >

① 최초 사업 허가('07.4월)시 제출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 중 이행하지 아니한 53개를 '11년 말까지 구축하여야 함

※ KBS(12개), 부산MBC(7개), 광주MBC(4개), 대전MBC(6개), 춘천MBC(17개), 제주MBC(2개), 대전방송(5개)

② 향후 재허가 기간('10~'12년, 3년) 동안의 추가적인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제출하고, 이를 이행하여야 함

〈 첨 부 〉

과태료 부과 내역

위반내용	법인명(채널명)	과태료(만원)
시간당 광고시간 초과	(주)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(OCN)	2,000
〃	(주)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(Super Action)	2,000
〃	중앙방송(주)(Q채널)	1,000
〃	(주) 엠지엠태원(MGM)	1,000
중간광고 시간·건수 초과	엔씨에스미디어(주)(리얼TV)	500
〃	(주)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(온스타일)	500
〃	(주) 이토마토(토마토TV)	500
시간당 광고시간 초과	케이시엔티브이(주)(KCN무협 TV)	500
〃	엔씨에스미디어(주)(리얼TV)	2,000
〃	(주) 햇터방송(브레인TV)	500
〃	씨엠씨가족오락티브이(CMC가족오락 TV)	500
〃	(주)지텔레비전(GTV)	1,000
〃	중앙방송(주)(J골프)	500
〃	(주)케이비에스엔(KBS Drama)	500
〃	(주)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(OCN)	3,000
〃	(주)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(Super Action)	3,000
〃	(주) 엠지엠태원(MGM)	2,000